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60
----------	-------

제출년월일 : 2013.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정이유

마포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함

### 다.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기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설계비, 건축비 및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부대비용,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용도에만 사용함

### 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됨
- 마. 위원회 기능(안 제5조)
-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
- 바. 의견청취 등(안 제13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사.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15조)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운용하며,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아.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 가능

###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3) 「지방재정법」 제89조~제95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3. 7. 4 ~ 7. 24 실시

-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 요약 및 검토

→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완료 : 교육지원과-7935(2013.08.16)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요약)	조치내용 (검토의견)
<p>발전소 지하화 주민협의체 위원 김종선</p>	<p>○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시설은 필수이나 발전소 재원의 절반정도는 서강·합정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p> <p>○ 발전소 지원금은 전액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조례화하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 필요</p> <p>○ 입지 역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건립 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임</p> <p>○ 위 시설 건립은 바람직하나 재원 및 입지는 신중하게 재고해 줄 것을 요망</p>	<p>▣ 조례 반영 해당사항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지원금 중 본 기금 조례의 재원으로는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의 건축비(법정 외)로 지원되는 130억 원을 제외하면 법정 특별지원금 중에서는 일부만 소요 되는 것이며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법정 특별지원금은 서강·합정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곳에 쓰일 예정임.</li> <li>○ 본 기금 조례의 재원은 비단 발전소 지원금만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며 기금의 50% 상당은 국·시비 보조금, 주차장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등의 발전소 지원금 외의 재원으로 구성됨.</li> <li>○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 부터 반경 5Km 이내를 범위로 하고 있어, 현 위치의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금 사용 가능</li> <li>○ 또한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공원과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등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상당의 지역투자 효과와 발전소내 공유재산(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토지교환(약2,200㎡) 부지 활용 주민편익시설 조성검토 중임.</li> <li>○ 공공시설 건립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부지매입비로서 마침 옛 구청사 부지가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 없이 이와 같은 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마포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6호선의 마포구창역이 건립예정지로부터 300M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양호함.</li> <li>○ 아울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임.</li> </ul>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조치사항 반영 완료(2013.05.24)

관 련 조 문	평 가 기 준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4조 (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 이해충돌 가능성	○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 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는 이해 충돌 방지 장치(제척· 기피·회피) 및 위원회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사후적 통제 장치(해촉) 마련	○ 권고안 반영 :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및 제9조 (위원의 해촉) 신설  ※ 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제8조 ~ 제18조는 제10조 ~ 제20조로 조문 이동
○ 제18조 (회계관계공무원)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 회계관계공무원의 회 계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함	○ 권고안 반영 : 제18조 제3항 조문 수정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개선 사항 : 「서울특별시마포구성평등기본조례」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각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 설계비, 건축비 등
2.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부대비용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각 국장 및 보건소장
3.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4.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운용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성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 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

2. 비용추계의 전제

-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계획 중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 비용추계기간 : 2013. 6 ~ 2016. 12. 31(43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발전소기금	3,000,000	10,000,000	7,840,000	0		20,840,000
	주차장특별회계		1,863,000	3,361,000	1,862,000		7,086,000
	국·시비보조금		2,137,000	2,138,000	2,138,000		6,413,000
	특별교부금		2,781,000	2,781,000	2,781,000		8,343,000
	소계(a)	3,000,000	16,781,000	16,120,000	6,781,000		42,682,000
세출	발전소기금	3,000,000	10,000,000	7,840,000	0		20,840,000
	주차장특별회계		1,863,000	3,361,000	1,862,000		7,086,000
	국·시비보조금		2,137,000	2,138,000	2,138,000		6,413,000
	특별교부금		2,781,000	2,781,000	2,781,000		8,343,000
	소계(b)	3,000,000	16,781,000	16,120,000	6,781,000		42,682,000
□ 총 비용(a-b)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소계	0	4,918,000	4,919,000	4,919,000		14,756,000
	국·시비보조금	0	2,137,000	2,138,000	2,138,000		6,413,000
재원	지방교부세	0	0	0	0		0
	특별교부금	0	2,781,000	2,781,000	2,781,000		8,343,000
자체 수입	소계		1,863,000	3,361,000	1,862,000		5,524,000
	지방세수입	0	0	0	0		0
	세외수입 등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1,863,000	3,361,000	1,862,000		7,086,000
기타(발전소기금)		3,000,000	10,000,000	7,840,000	0		20,840,000
합계		3,000,000	16,781,000	16,120,000	6,781,000		42,682,000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강경희
연락처	02-3153-899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의뢰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차후 세부사항 변경될 수 있음.

□ 규모 : 지하2/지상6층/연면적 약17,414㎡

(단위 : 천원)

구분		면적(㎡)	용도			
층별면적	지상6층	1,220	도서관(3,664㎡)			
	지상5층	1,222				
	지상4층	1,222				
	지상3층	1,250	다목적실(공연장 등), 방과후 돌봄센터, 교육비전센터, 동아리실 영어체험센터, 상담실, 세미나실 등			
	지상2층	1,250				
	지상1층	1,250				
	지하1층	5,000	주차장(7,040㎡), 임대사무실, 기계실			
	지하2층	5,000				
총면적		17,414				
총사업비 (천원)	시설비	설계비	1,629,000			
		감리비	2,374,000			
		공사비	37,214,000			
	시설부대비		85,000			
	철거비 등		1,380,000			
	총계		42,682,000			
	연차별 소요예산 (천원)	년도	2013	2014	2015	2016
총계		3,000,000	16,781,000	16,120,000	6,781,000	42,682,000
설계비		1,620,000	9,000			1,629,000
감리비			2,374,000			2,374,000
공사비			14,313,000	16,120,000	6,781,000	37,214,000
시설부대비			85,000			85,000
철거비 등		1,380,000				1,380,000
기존 건축물 포함	주차(최대)	186대				
	주차(법정)	79대				
	주차(일반)	107대				
예정공사비 단가		도서관 2,515천원/㎡, 교육시설 2,205천원/㎡, 주차장 1,299천원/㎡				
공사비		도서관 : 5,303㎡ × 2,515,460원 = 13,339,484천원 청소년교육센터 : 8,031㎡ × 2,205,483원 = 17,712,233천원 주차장 : 4,080㎡ × 1,299,020원 = 5,300,001천원 토공사비 : 863,000천원				